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202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202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214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윤형수, 전윤선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권우상

변론 종결 2021. 11. 12.

판결 선고 2022. 2. 1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214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6.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91,704,8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91,704,8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704,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858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6. 'C은 원고에게 91,70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035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14. 7. 26.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91,704,8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91,704,8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C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약정 내지 증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피고의 친척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 받는 돈, 피고의 근로소득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전액 피고가 마련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C이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호(이하 'K 아파트'라 한다)를 M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는 M이 K 아파트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① C이 2013. 6. 10. K 아파트를 거래가액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4. 10. 23. M에게 거래가액 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② 위 매도 당시 K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3500만 원, 2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0. 28. 모두 말소된 사실, ③ K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채무자 M,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M이 K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O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M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① 2014. 9. 2.경 E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 F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4. 9. 5.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4. 10.경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 H아파트 I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1) 5000만 원과 ④ 2013. 4.경과 2014. 9.경 사촌 여동생 J으로부터 기존에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7000만 원 및 보관 중인 수표2) 5655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⑤ 2014. 3.11.부터 2020. 12. 31.까지 P요양센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피고는 대출금과 보유 중인 현금,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 법원의 G 주식회사,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비교하면 실제로 매도인 D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시점과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피고의 근로소득 합계금액은 94,058,669원에 불과한데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은 합계 105,021,73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자력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나, 피고가 대출금과 자신이 보유 중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을 살펴봐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지현

판사이일영

판사신상렬

별지

- 1) 원고는 피고가 당시 C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아닌 피고가 그 명의로 직접 H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C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2) 원고는 위 수표가 실질적으로 C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